



MINI Market Report

국가	스페인
제품	인삼 제품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ONTENTS

I. 스페인 마케팅 방안	1
1. 스페인 시장 특징	1
2. 스페인 시장 진출 TIP	2
II. 스페인 시장 정보	3
1. 스페인 인삼 수입추이	3
2. 스페인 인삼 시장동향	4
III. 스페인 가격 정보	6
1. 스페인 인삼 판매현황	6
2. 스페인 인삼 판매가격	6
IV. 스페인 유통 정보	8
V. 스페인 통관 정보	11
1. 관세율	11
2. 통관 유의사항	13
3. 통관 절차	16
VI. 스페인 검역 정보	21
1. 스페인 검역 절차	21
2. 스페인 검역 제도	23
VII. 스페인 라벨링 정보	26
1. 스페인 라벨링 및 제품표기사항	26
2. 스페인 식품라벨 규정 강화	27
VIII. 스페인 바이어 정보	29

※ 참고자료

스페인 마케팅 방안

1. 스페인 시장 특징

□ 최근 완제품이 아닌 첨가물로서의 인삼 소비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

- 스페인 내에서의 인삼 소비는 과거 인삼차, 인삼캡슐 등과 같은 완제품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파악

- 하지만, 최근 들어 인삼은 완제품이 아닌 첨가물로서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식품, 피로회복제, 에너지 드링크 등에 걸쳐 각종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즉, 현지 소비자들은 인삼이 주가 된 제품보다는 인삼이 첨가된 제품에 대해 더욱 높음 호응도를 보이고 있음

□ 현지 소비 확대에 힘입어 2010년 이후 인삼 수입 회복세

- 스페인의 인삼 수입은 2009년에 66만 유로를 기록하며 절정에 달한 이후 감소세를 나타냄

- 하지만 최근 3년간 수입규모가 꾸준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인삼 수입 진입장벽 높음

- 인삼제품에 대한 분류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 스페인 정부는 의약품으로 분류하기 시작

- 현재는 자체 실험실을 보유한 회사로서 보건소비부에 인삼제품의 의약품 등록을 필하고 수입허가를 얻은 전문회사에 한해 수입을 허가하고 있음

2. 스페인 시장 진출 TIP

□ 인삼류 제품 등록 절차 및 규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진출해야

- 스페인에서는 인삼 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통관 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지 수입상들이 인삼류 등록 등 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직접 확인해야 함
- 현지 유통 채널 보유한 수입상 연계를 통한 소비자 접점 확보도 필요할 것임

□ 남미 전역의 스페인 문화권과 유럽/북미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 스페인 시장에서의 성공은 유럽 시장과 중남미 시장 공략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스페인은 한국 기업의 신규 진출이 까다로운 시장이지만, 현지 소비규모가 크거나 생산량이 적은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 공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스페인 바이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현지 요리에 흔히 사용되는 냉동어류나 해산물,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가의 버섯류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인삼공사 진출 성공사례 벤치마킹 필요

- 유럽에서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제품은 서구형 제형인 홍삼분캡슐 제품
- 정관장이 유럽시장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명품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유럽의 주요 건강식품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등 신규 거래선을 확대해가는 노력이 끊임없이 뒷받침되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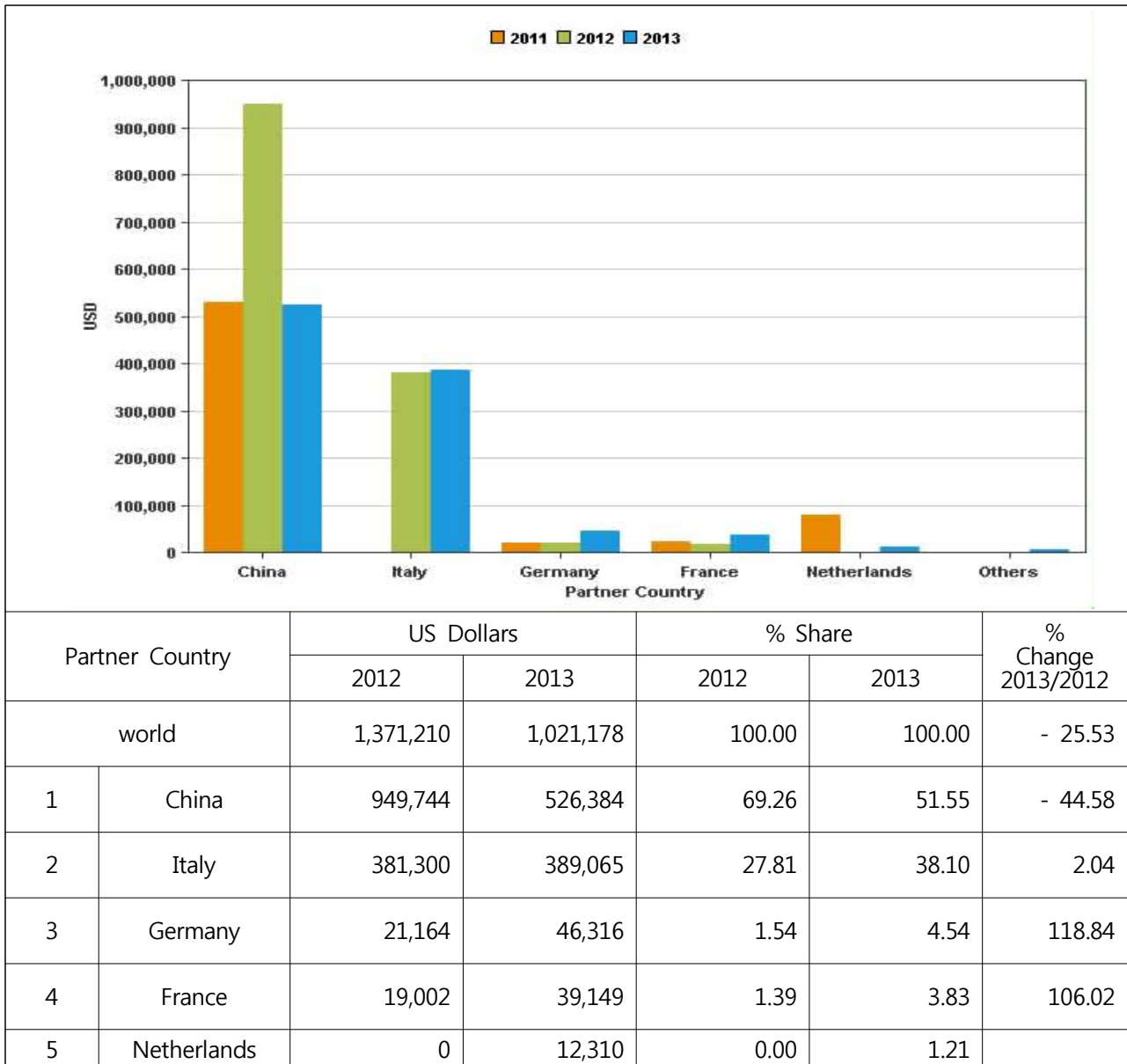
스페인 시장 정보

1. 스페인 인삼 수입추이

□ 스페인 인삼 수입동향

- 인삼 HS CODE 1211.20 : Ginseng Root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 스페인 인삼 수입 통계 >



6	Korea South	0	7,953	0.00	0.78	
---	-------------	---	-------	------	------	--

출처 : GTA (<http://www.tradestatistics.com/gta/>)

- 스페인의 2013년 인삼 수입액은 102만 557 달러로 전년 대비 25%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스페인의 인삼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3년 52만 6,384 달러의 인삼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한 수치임
- 스페인은 2013년 한국으로부터 7,953 달러 규모의 인삼을 수입하였음


2. 스페인 인삼 시장동향

□ 소비동향

- 스페인 국민은 급여의 26%를 식품 구입에 소비하고 있으며, 식료품 구매는 40% 이상이 슈퍼마켓을 이용하며 그 외 나머지는 식품점과 대형마켓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완제품이 아닌 첨가물로서의 인삼 소비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과거에는 스페인 내에서의 인삼소비는 인삼차, 인삼캡슐 등과 같은 완제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인삼이 완제품이 아닌 첨가물로서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식품, 피로회복제, 에너지 드링크 등에 걸쳐 각종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즉 현지 소비자들은 인삼이 주가 된 제품보다는 인삼이 첨가된 제품에 대해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음
- 인삼이 스페인 일반 소비자에게 처음 소개된 시기는 약 80년대 중반으로 한때 현지에는 ‘인삼붐’ 이 일기도 함. 80년대 중반 이후 동양문화가 스페인 사회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며 자연스레 인삼차와 같은 제품들이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을 중심으로 유통되기 시작
-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90년대 중 한때 인삼 붐이 일기도 함. 이후 인삼제품에 대한 소비열기가 다소 식은바 있음. 현지 업계에 따르면, 이는 인삼제품의 효능이 각자의 체질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며, 현지 소비특성 상 건강보조식품에는 순환주기가 있어 소비자들이 인삼 대신 다른

식품을 찾아 나섰기 때문

< 스페인 시장에서 판매 중인 인삼 성분 포함된 건강보조식품 >

브랜드 명	종류	사진
Canela, Ginseng, Kola, Jengibre	건강보조제(캡슐)	
Jalea+Ginseng	건강보조제(캡슐)	
Monster Energy	에너지음료	
Multi Vitaminas	비타민(캡슐)	

출처 :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

III 스페인 가격 정보

1. 스페인 인삼 판매 현황

□ 스페인 인삼 판매 현황

- 최근 완제품이 아닌 첨가물로서의 인삼 소비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
- 과거에는 스페인 내에서의 인삼소비는 인삼차, 인삼캡슐 등과 같은 완제품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인삼이 완제품이 아닌 첨가물로서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식품, 피로회복제, 에너지 드링크 등에 걸쳐 각종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2. 스페인 인삼 판매가격

1) Parafarmaciaeconomica 매장 홍삼 판매 현황

※ 스페인 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의약품 만 전문적으로 판매

업체명	PHARMATON	GERMINAL	AMPOLLAS
제품 이미지			
제품명	COMPLEX 20 COMPRIMIDOS EFERVESCENTES	VITALIZADOR INSTANTÁNEO PIEL EFECTO MAQUILLAJE 3 ML 3 AMP	CANELA, GINSENG, KOLA, JENGIBRE AMPOLLAS BEBIBLE 20 AMP

가격	EUR 9,69 €	EUR 9,36 €	EUR 10,35 €

출처 : <http://www.parafarmaciaeconomica.com/>

2) Biomanatial 매장 홍삼 판매 현황

※ 많은 식품 브랜드가 모여서 건강관련 책, 건강기능식품과 식료품을 판매

업체명	ENERGISAN	Marnis	Marnis
제품 이미지			
제품명	ENERGISAN Royal jelly and Ginseng	Ginseng 1000 with Soya Lecithin	Korean Ginseng 30 capsules
가격	EUR 23,44 €	EUR 18,95 €	EUR 16,95 €

출처 : <http://en.biomanatial.com/index-en.html>

IV 스페인 유통 정보

□ 인삼 수입

- 스페인의 경우 과거에 인삼제품을 건강식품으로 분류해 정부로부터 국내판매권 (Permiso de Comercializacion) 허가를 받은 건강식품 수입상들이 인삼제품을 수입, 판매했음
- 하지만 지난 1994년 이후 인삼제품에 대한 분류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 스페인 정부는 의약품으로 분류하기 시작해 현재는 자체 실험실을 보유한 회사로서 보건소비부에 인삼제품의 의약품 등록을 필하고 수입허가를 얻은 전문회사에 한해 수입을 허가하고 있음. 해당 등록 및 허가과정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각각 1 ~ 2년이 소요
- 마드리드 한국무역관이 현지 3대 수입상을 접촉한 결과 1개 수입상만이 의약품으로 정식 등록해 직수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수입상은 2002년 사스 발생이후 통관이 엄격해진 스페인 세관을 피해 건강식품으로 통관이 비교적 수월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를 통해 간접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유통 시장 현황

- 스페인 대형유통업협회(ANGED)에 따르면, 2011년 스페인 소매시장 매출 잠정규모는 2,174억 유로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업계 투자 또한 큰 폭으로 감소
-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매유통업 매출은 2008년 2,407억 유로를 기록한 이후 크게 축소
- El Corte Ingles를 비롯한 종합품목 소매유통기업들은 해외에 바이오피스를 설치하여 해외기업으로부터 직수입하기도 하나, 대형유통망은 자국 공급선(도매상, 제조사 등)을 통한 구매비중도 높음
- ANGED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대형유통망의 국내 공급선 구매액은 약 289억 유로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총매출 대비 구매규모는 74%로 전년 수준 유지

□ 주요 대형 유통업체 현황

- 스페인의 주요 소매유통업은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트가 강세를 보임
- 2010년 기준 소매유통업 최대 기업은 식료품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슈퍼마켓 체인 Mercadona임
- 품목의 다양성과 전국적 분포를 고려한 최대 소매유통망은 국내 유일의 백화점 체인으로서 하이퍼마트(Hipercor), 슈퍼마켓(Supercor), 편의점(Opencor), DIY용품점(Bricor)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El Corte Ingles가 대표적
- 이 외에 Zara 등으로 유명한 Inditex 그룹과 의약품·위생보건용품 유통그룹 Cofares 등이 주요 유통망에 포함

< 스페인 10대 소매유통기업 현황 >

순위	기업명	'11년 매출 (백만유로)	평균 고용인원(명)	분야
1	Mercadona	17,831	63,500	슈퍼마켓
2	El Corte Ingles	16,413	102,699	백화점 및 종합유통
3	Inditex	13,793	96,195	패션
4	DIA	11,100	45,489	슈퍼마켓
5	Carrefour	8,104	30,640	하이퍼마트
6	Eroski	6,939	43,015	하이퍼마트
7	Alcampo	3,600	10,908	하이퍼마트
8	Cofares	2,916	647	의약품 / 위생보건용품
9	Hipercor	2,447	14,690	하이퍼마트
10	Lidl	2,158	7,181	할인마트

출처 : Fomento 25,000 해당기업 홈페이지

- 도매유통기업은 소매유통업체에 비해 규모와 매출이 적은 편이며, 전문품목의 도매유통업체가 강세를 보임

- 2010년 기준 매출 5억 유로 이상 대형 도매기업은 28개사로 소매유통망(동일기간 62개사)의 절반수준이며, 해당 기업들의 평균매출액은 9억 9,000만 유로로, 소매 20억 6,000만 유로 대비 절반수준

< 스페인 10대 도매유통기업 현황 >

순위	기업명	'11년 매출 (백만유로)	평균 고용인원(명)	분야
1	Cofares	2,916	647	의약품/ 위생보건용품
2	Pescanova	1,565	9,331	수산물
3	Alliance healthcare	1,496	36,860	의약품
4	Samsung Electronics	1,364	280	가전/IT기기
5	Makro Autoservicio	1,309	3,600	종합품목 (업소용 등)
6	Hewlett Packard	1,296	2,537	IT기기
7	Hermandad Farmaceutica del Mediterraneo	1,283	870	의약품
8	Siemens	1,165	2,318	가전
9	Guissona	1,150	3,179	식품
10	Reguladora de Compras de mediterraneo	1,150	110	의약품

출처 : Fomento 25,000 해당기업 홈페이지

- 대형 소매유통업은 막대한 구매력을 내세워 도매업 및 중소규모 제조업체들을 지배하고 있음
- 의류를 제외한 경우 특정 브랜드의 직영매장이 발달하지 않은 편이므로 대형 소매유통망의 영향력이 지대

V 스페인 통관 정보

1. 관세율

< 관 세 >

HS코드명			품 명 [대한민국(2013년)]	기본 세율
			한 글	
1211	20		인삼	
1211	20	1	인삼 뿌리	
1211	20	2	인삼 가루	
1211	20	1190	기타	20%
1211	20	13	홍삼	
1211	20	1319	기타	20%

품목번호	1211.20		
품명	국문	- 인삼근	
	원문	- Ginseng roots	
	영문	- Ginseng roots	
간이정액환급액	해당사항 없음[세율적용 우선순위]		
관세	한·EU 협정세율 : 0 %		
협정세율	구분기호	관세구분	관세율
	KR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0 %

출처 : <http://www.customs.go.kr/>

- 이 관세율 표는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927/2012 (9 October 2012) amending Annex I to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 on the tariff and statistical nomenclature and on the Common Customs Tariff 에

따라 2013년 1월 1일 부터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위의 표로 보았을 때, 인삼제품의 관세는 0%로 확인

- MFN(최혜국관세율) : GATT회원국 또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와 최혜국관세 혜택을 부여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 되는 세율은 관세율 표 제3번 칼럼에 표시된 협정세율, 협정세율보다 국정세율(autonomous rates)이 낮은 경우 주석의 방법으로 표시된 국정세율이 적용
-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가격과 관련된 규정은 관세의 종가세를 평가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호(headings)나 소호(subheadings)의 범위를 정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도 적용, 중량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과세중량과 호나 소호의 범위를 정하는 중량은 다음에 따름
 - (a) 총중량은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의 중량이 포함된 물품의 중량을 뜻함
 - (b) 순중량 또는 중량은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의 중량을 제외한 물품 자체의 중량을 뜻함

□ 관세 제도

- EU회원국이기 때문에 다른 14개 국가들과 동일하게 공동 관세를 부과하며 품목별 수입허가 및 쿼터도 EU와 동일하게 시행함
- 농작물에 대한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며, 고기, 치즈, 바나나에 대하여는 EU가 요구한 쿼터를 적용함
- EU는 대부분의 식료품과 농작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인삼의 경우 4%를 부과하고 있음
-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음.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함
-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스페인 경우에는 21%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스페인의 경우 주류, 담배,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 (excise)가 부과됨. 특별세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음

- 반제품 수입이거나 EU 이외의 지역으로 재수출하기 위한 상품의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수입품이 재수출되지 않거나 EU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수입세나 관세가 부과됨
- 한편 반제품의 조립 또는 제조를 위해 EU 통관지역을 벗어나 수출을 했다가 스페인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상승 부분만큼의 세금을 부과함

2. 통관 유의사항

□ 수입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 EU 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 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O" 표시 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ation oder Handelsregelung(공동 시장조직 또는 공동거래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들은 EU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 감시(EU 회원국 전체가 또는 EU 집행위의 승인 하에 독일 단독으로) "UeD" 표시 품목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 기타를 기재한 감시 서류(Ueberwachungsdokument)를 연방 경제청(BAW, Eschborn 소재)이나 연방 농산 식품청(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 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
- 점검 신고 "EKM" 품목들은 BAW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통관 시에 수입 점검 신고(Einfuhrkontrollmeldung)를 이행해야 함.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수입 목록에 기재된 품목 중) 수입 승인 및 기타 규제 대상 품목

- 수입 승인(Genehmigung)을 요하는 것: 수입 리스트의 제 4 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이 요구된 경우
- 수입 License(Lizenz)을 요하는 것: 수입 목록의 제 4컬럼에 "L"라는 코드가 있을 경우.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License(Einfuhrlizenz)가 필요, 단, EU의 조직(organe)이 별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수량제한은 채택되지 않음
- 원산지 증명(Ursprungszeugnis)을 요하는 것: 수입목록의 5 컬럼에 "U"라는 코드가

있으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함. 또 "UE" 표시 품목에는 원산지 진술서(Ursprung serklaerung)가 필요함

□ 수입 목록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들: 규제 품목

- 일반적 규제(3항목): 국제 조약, 협정(GATT 또는 EU의 Roma 조약 등)에 의한 것
- 공공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11항목): 은행권, 정부 채권 등에 사용되는 종이, 무기, 폭발물, 핵 물질, 방사성 물질 등
-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4항목): 폐기물, 연료 첨가용 연 및 이를 함유 하는 물질, DDT, 유독성 물질
- 건강보호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18항목): 식용, 정육관계(9항목), 계란 및 그제품(2항목), 기타식품(3항목), 마약, 전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알코올, 인산 동물(13항목), 식물 (5항목)
- 공업 소유권의 보호(3항목): 원산지의 허위신고 금지에 관한 Madrid협정 (1925.3.21.) 비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상동 Lisbon 협정(1958.10.31)에 저촉되는 경우, 상표법(Markengesetz, 94.10.25에 Warenzeichengesetz을 전면 개정)에 저촉되는 경우, 농산물 시장 질서(Marketordnung과 관련) 유지 대상 물품(8항목)

□ 스페인 내 주요 통관 전문기업

- TIBA Internacional S.A. (발렌시아, 스페인 주요도시에 사무소 운영)
 - 전화: +34 963 674 478
 - 주소: C/ Jose Aguirre 40, 7º 46011, Valencia, Spain
 - 홈페이지: www.tibagroup.com
- Lillo Agencia Transitaria S.L.
 - 전화: +34 963 678 611
 - 주소: C/ Dr. J. J. Domine, 6, 46011, Valencia, Spain

- Taan Comerc

- 전화: +34 932 984 436
- 주소: C/ Zona Aeropuerto, Edf. De Servicios Generales, Ofic. B001, 08820, El Prat de Llobregat, Barcelona, Spain

- Agencia de Aguas Vicente Milara

- 전화: +34 963 24 55 23
- 주소: C/ Dr. J. J. Domine, 20, planta 6, 46011, Valencia, Spain
- 홈페이지: www.milara.com

< 스페인 내 주요 항구 >



출처 : www.globalwindow.org

3. 통관 절차

< 수입 통관 절차 >

1. 물품도착전	2. 물품반입	3. 수입신고	4. 관세납부 및 물품반출
적하목록사전제출			
	보세구역물품반입 도착보고 하역 및 검사		
		수입신고 신고서처리	
			관세납부 보세구역물품반출

출처 : 통합무역정보시스템(<http://www.tradenavi.or.kr/>)

- 수출자는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소재지 관한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 수출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부정 수출,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등에 적발될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음

□ 수입 시 통관 절차

- 스페인으로 물품을 운송 하는 경우, 스페인 내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운송 업체를 이용하여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Invoice, PackingList, B/L, C/O 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 시기에 맞춰 현지 바이어에게 전달하며, 현지 바이어는 이를 통관 관세사에게 전달
- 통관대행업체(스페인의 경우 물류업체와 통관업체가 별개인 경우도 존재)가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세관에 접수하고 수입승인번호(DUANo.)를 받고, 수입품을 반입. 통관은 통상 3~7일이 소요됨

- 스페인 항구까지만 도착하고 현지 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항구를 기준으로 통관업무 처리가 가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며 이 경우 가급적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선정 하도록 함
- 우편물 발송 시 카탈로그나 제품 샘플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관부가세 비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의. 비록 샘플일 경우라도 스페인 내 시중가격을 적용하여 관부가세가 부과됨
- 모든 B2B 거래 시에는 통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모든 절차는 시스템화되어, 세관구역에 화물 이 도착하면 통관사가 해당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며, 관련 경비 납부 후 통관 을 기다림. 만일 세관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원본 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 단계별 관련법령 및 규정, 제출 서류 및 진행 요령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수입품목에 따른 수입자유화 품목은 수입이 자유로우며, 수입허가 품목은 원칙상 정부에서 수입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입이 거의 불가능함
- 통관절차는 세관은 수입 명의인에 대해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은행이 지정된 경우 은행이 수입업자의 서류를 확인함
- 식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위생번호가 명기되어야 하며 샘플링 위생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스페인 공업규격 또는 CE 마크가 필요한 품목인 경우 제품에 해당번호, 의류/직물의 경우는 쿼터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품, 식품, 공예품, 미술, 골동품 등 직접 최종소비자 사용자에게 제공될 경우 라벨, 설명서 등 스페인어 표기가 의무화 되어 있음

□ 수출 시 통관 절차

- 사전 수출신고, 수출허가 신청 시 일반 수출허가 신청서류는 세관용이 필요하며 수출허가 유효기간은 6개월이 원칙임
- 수출대금 결제에 있어서는 수출업자는 수출허가, 사전 수출신고에 기재된 금액 회수의 의무가 있으며 수출대금은 청구가능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함

□ 잠정통관

- 수출품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사용되는 물품의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통관을 허용함
- 수입업자는 재수출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보증서 형태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함. 수출이 완료되면 보증은 해지되고 보증예치금은 환급됨
- 재수출 예정인 상품은 관세청의 승인을 받으면 수입세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잠정통관이 가능함

□ 샘플(Sample)의 통관

-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샘플: 수입세나 관세는 면세됨. 제품 설명서 또는 상품송장에 "No-Commercial Value" 라는 문구를 표기 하여야 함
- 상업적 가치가 있는 샘플: 다음 조건을 구비하는 경우 수입세/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 가능
- 샘플이 전시나 시연의 목적으로 이태리에 수입되어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될 것이라는 것을 이태리 영사가 인증한 경우
-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수출국의 상공회의소가 인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수입 시 관세나 수입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중량과 금액을 포함하는 각 샘플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까네뜨(Carnet)의 통관

- Carnet는 샘플이나 전문장비의 잠정통관을 촉진하기 위한 통관서류임. Carnet통관을 하는 경우 수입품에 관세, 조세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입 가능. Carnet통관의 경우 수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모든 서류가 구비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 Carnet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저렴함. 재수출을 하지 않거나 관세 또는 조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Carnet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현금을 예치하여야 함
- 샘플에 면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나중에 팔 수 없도록 표시를 하거나, 구멍을 뚫거나, 자르거나 기타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샘플은 최장 1년까지 수입이 허용됨

□ 관세 제도

- EU회원국이기 때문에 다른 14개 국가들과 동일하게 공동 관세를 부과하며 품목별 수입허가 및 쿼터도 EU와 동일하게 시행함
- 농작물에 대한 다양한 관세를 부가하며, 고기, 치즈, 바나나에 대하여는 EU가 요구한 쿼터를 적용함
- EU는 대부분의 식료품과 농작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인삼의 경우 4%를 부과하고 있음
-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음.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함
-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스페인 경우에는 21%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스페인의 경우 주류, 담배,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 (excise)가 부과됨. 특별세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음
- 반제품 수입이거나 EU이외의 지역으로 재수출하기 위한 상품의 수입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수입품이 재수출되지 않거나 EU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수입세나 관세가 부과됨
- 한편 반제품의 조립 또는 제조를 위해 EU 통관지역을 벗어나 수출을 했다가 스페인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상승 부분만큼의 세금을 부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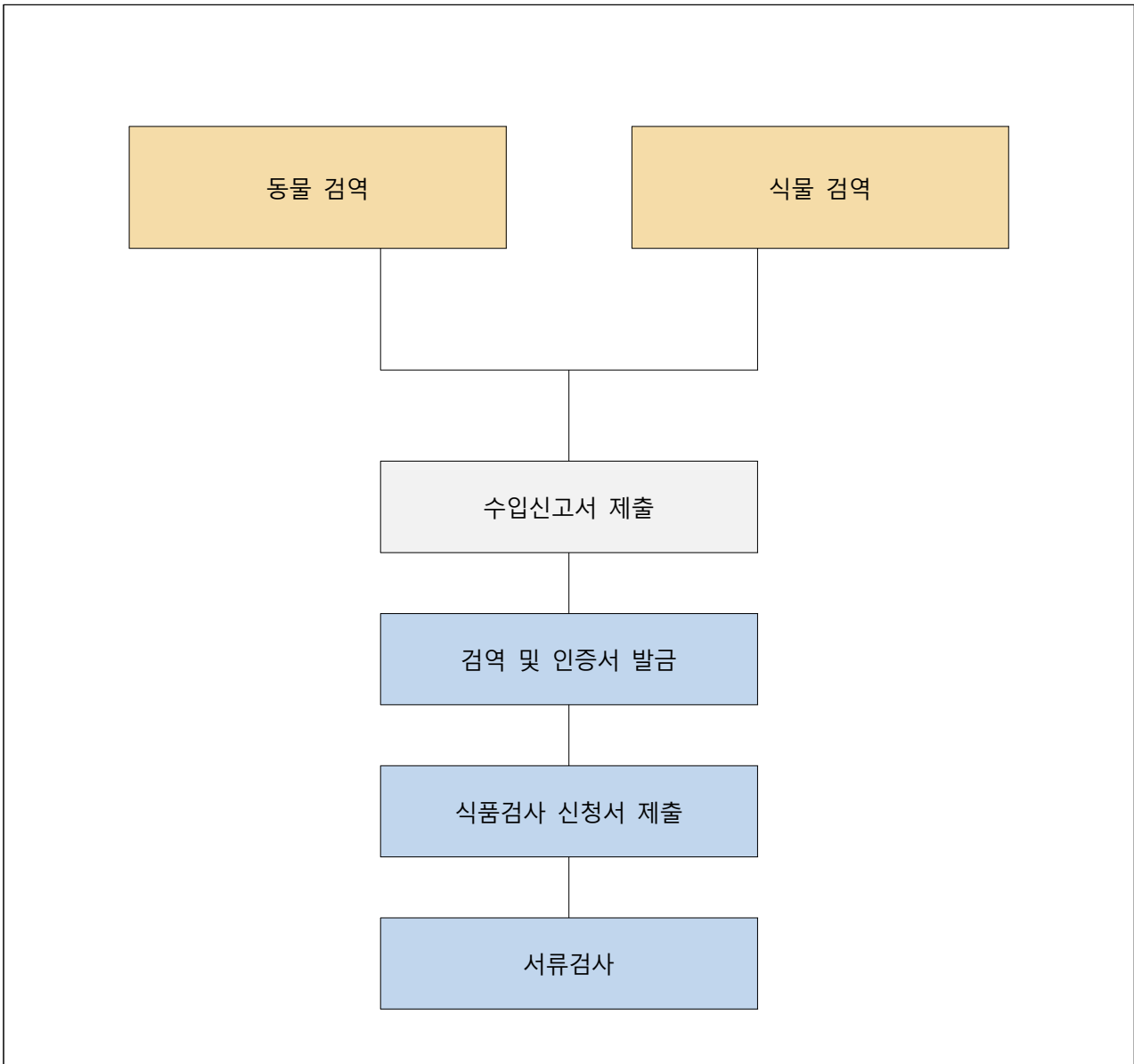
□ 수입규제 사례

- 스페인에는 인삼제품이 건강식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실제로는 인삼차를 제외한 다른 인삼제품들, 즉 인삼 슬라이스, 드링크, 파우더류의 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이 가능한 인삼차의 경우에도 수입상이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어서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VI 스페인 검역 정보

1. 스페인 검역 절차

< 식품 검역 절차 >



출처 : KATI(www.kati.net)

※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EU 규정을 준수함

□ 구비 서류

- 수입신고서, 청구서, 패키징 리스트, 선하 증권
- 제품의 견본 시험 및 분석은 보건 당국 또는 실험실에서 수행함. 이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착 후 48시간 내에 수입 작업이 완료되고 제품이 유통됨
- 동물에서 파생된 제품(특히 육류), 약초 제품 및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검사를 시행함
- 장기 계약 체결이나 고가의 화물 운송 이전에 수출국의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먼저 해당 화물에 적용될 관세 분류, 관세율 및 세금에 대한 사전 판정을 얻을 수 있음. 사전 판정 요청서에 제품, 재료, 그리고 세관이 제품을 정확히 분류하는데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을 설명해야 함. 세관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요청서에서 제공한 제품 설명이 정확히 일치하면 사전 판정이 받아들여짐

□ 수입 승인 절차

-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식품안전기관은 EU 집행위원회에 수출을 위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청서에는 EU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모든 관련 법적 조항을 이행한다는 식품안전기관의 확인이 들어 있어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질의서 작성 후 식품수의청에도 송부, 질의서의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 식품 수의청은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 이 단계에서 수출국에 대한 잔류 농약 모니터링 계획이 반드시 제출되고 승인 받아야 함 (아직 승인을 안 받은 경우)
- EU 집행위원회는 수출국에게 수입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모든 EU 회원국 대표들과 논의
- 식품수의청의 업무 결과와 수입국의 보증을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해당국가 및 지역의 인증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 회원국들의 의견이 긍정적이면, EU 집행위원회는 그 기준을 채택함 적합시설에 대한

리스트는 수출국의 요청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EU에 수출하기를 원하는 업체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의 관련 담당기관에 요청하여 상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식품위생 검사기관

- FVO(식품수의청 : Food and Veterinary Office)

- 소 속 : 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 감독범위

- 식품위생
- 동식물 검역
- 동물의 복지

- 담당업무

-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및 동물의 복지 등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3국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감독
- EU회원국의 식품 안전, 동물의 복지 및 동식물 검역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 회원국들과 연계
- 식품위생에 관한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 개발
- 수산식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산식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 담당

2. 스페인 검역 제도

※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EU 규정을 준수함

□ 검역 제도

- 유럽 연합은 위해 식품 발생 시 회원국 간에 신속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통일된 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EU 내에서 유통되거나 제 3국에서 수입되는 식품과 사료에 대해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 을 운영하고 있음

-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은 경계통지 (Alert Notifications), 정보통지 (Information Notifications), 통관거부 (Border Rejection Notifications)로 이루어져 있음
- 경계통지는 식품 또는 사료가 이미 시장에서 유통 중이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동되는 것으로써 2009년 557건 중에서 삼분의 2 이상이 유럽 연합 내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제품에서 병원성 미생물, 알레르기 유발 항원, 중금속, 곰팡이독소가 발견되어 조치가 내려짐
- 정보통지는 제품의 위험성이 확인되었으나 제품이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거나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경우, 또는 위험성이 적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경우로, 정보통지의 61%는 제 3국에서 수입된 제품에 내려짐
- 정보통지의 대부분은 제품에서 병원성 미생물 또는 중금속이 발견되거나 농약 잔여량이 높은 경우, 그리고 비 승인된 유전자 변형된 식품 또는 사료인 경우였음
- 통관거부는 유럽 연합 지역 내로 유입되는 것이 거절되어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된 제품에 대한 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관거부된 제품의 38%가 곰팡이 독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수입 검사기관

- FVO(식품 수의청 : Food and Veterinary Office)
 -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및 동물의 복지 등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3국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감독
 - 실제 제품에 대한 검역은 회원국 검역당국에서 담당

□ 식품 안전 관리 제도

- GAP 관련 정책 : 유럽 농업정책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식품안전, 환경, 동물복지 등을 위하여 농민은 우수농산물 생산기준(good farming practice)을 실천하도록 유도

- 수입식품 관리제도 : 유럽연합 규정(Reglement CEE N° 802/68)에 따라, 둘 또는 여러 국가가 개입된 경우 생산된 상품의 원산 국가는 최종공정이 이뤄지거나, 입증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제적 가치가 부여된 국가 그리고 신제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중요한 생산 공정을 실시한 국가로 규정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수입 검사 제도 : 식물, 즉 곡물, 과일·채소, 포도주 등은 유럽연합차원에서 단일화된 적용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국민건강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육류와 유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마다 각자의 규정과 시행방법을 부가하여 엄격하게 적용
- 식물 검역 제도 :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역외 국가들의 모든 식물류에 대한 통제를 규정한 기본지침,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2000/29/EC
- 수산물 검역제도 : 유럽연합은 수산물의 수입과 관련한 제조건을 규정한 법규(Directive N° 91/493/EEC)를 제정하여 운영
-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정책 : 유럽연합은 식품위생 및 안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법규 제정운영(새로운 식품들과 새로운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Reglement N° 258/97/EEC, 식품의 라벨 및 전시 그리고 광고와 관련한 유럽연합 국가별 제 규정들의 통합규정, Directive N° 97/1 2/EEC, 쇠고기식별 및 관리기록 체제 구축과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식품의 라벨표시 관련규정, Reglement N° 820/97)
- 원산지 명칭 보호 및 품질인증제도 : 농산품과 식품의 품질 향상과 우수한 품질의 제품에 대한 시장가치의 보장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과 투명한 식별을 보장하기 위해 지리적 원산지 표시제도 및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Traceability : ‘식품, 사료,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 및 식품이나 사료에 혼입되는 것이 의도되고 또는 예상되는 물질의 traceability는, 그 생산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 있어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규정해 모든 식품에 대한 traceability 확립을 의무화하고 있음

Ⅶ 스페인 라벨링 정보

1. 스페인 라벨링 및 제품표기사항

※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EU 규정을 준수함

□ 상표 및 표식

– EU에서의 기본적인 제품 표기조건

- 제품명(제품의 상대 또는 특별취급)
-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EU 내에서의 판매자 또는 수입 업자 명
- 수입국의 언어로 표기하여야 함.
- 원산지 표기
- 무게에 따른 성분
- 중량 및 부피
- 특별 저장조건
- 제품의 유효기간
- 기타 특별한 주의사항

– 수입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없음. 수입품의 원산지는 제품이나 컨테이너의 Marking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태리에 도착하는 선적서류에 의해 판단함. 그러나 특정품목의 경우 여러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의 성분, 제조업체 명 및 수출지를 표시해야 함

– Marking이나 Labeling이 필요한 품목

- 석회, 시멘트, 피아노, 자동피아노, 하모니카 및 유사악기, 의료용 온도계, 의약품, 화장품 등
- 포장된 식료품, 증류주, 와인, 맥주, 식초 및 음식물 등은 제조업체, 성분, 용량, 원산지를 보여주는 라벨을 붙이도록 규정한 특별규정들이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선적에 앞서 이에 관한 사항 검토가 필요함

2. 스페인 식품라벨 규정 강화

- 2011년 7월 6일 EU 의회는 2 차 독회에서 현행 기존 식품 라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 명료성을 제고한 최종 규정 안을 채택했음. 신규 식품 라벨 법은 소비자가 식품 구매 때 구매하려는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염분 등의 함유량과 식품의 열량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과 알레르기 성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해당 성분을 소비자가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현행 기존 규정보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

- 신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알아보기 쉽고 명료한 정보를 라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규의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키 위한 것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양 성분표 표시 의무
 - 소비자들이 한 눈에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carbohydrates), 당분(sugars), 단백질(protein), 염분의 함유량과 열량(energy content)을 읽을 수 있도록 포장 위에 표로 표시해야 함
 - 열량과 성분 함유량의 기준은 100g 당 또는 100ml 당으로 표시되어야 함. 영양 성분표 이외 추가로 1인분 개당(portion) 열량과 성분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음

- 알레르기성 성분은 다른 성분과 구별되게 표시
 - 현행 EU식품 라벨 규정에서도 포장된 식품(pre-packed foods)에 들어있는 알레르기성 성분(allergenic substances)을 포함한 모든 성분들이 구별 없이 리스트 형식으로 포장 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 규정에서는 특히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현행 규정과 달리 해당 알레르기 성분(들)이 여타 성분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강조 표시. 이 같이 다른 성분과 구별될 수 있는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 눈에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한 식품임을 인지토록 하기위한 것임
 - 신 법규에서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구내식당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이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식품 카테고리 확대

- 쇠고기(beef), 꿀, 올리브유, 생 과일 및 야채 등 일부 식품과 그 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원산지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EU의회의 요구로 신 규정에서는 현행 규정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다가 돼지, 양, 염소, 조류의 신선한 고기를 추가하여 이들 제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 이 조항에 대한 이행 법규는 집행위가 신 규정 발효 일부터 2년 내에 마련할 것임
- 또한 앞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가 신 규정에서 나열된 품목 이외 여타 다른 카테고리의 식품(재료로 사용된 고기, 우유 또는 비공정 식품) 까지 확대될 것이나 확대하기 전에 집행위는 그러한 규정의 이행 가능성(feasibility)과 예상되는 추가 비용 등의 영향을 조사, 검토한 후 긍정적인 결론에 귀결할 때 확대를 결정할 예정임

□ 소비자를 오도하는 포장 금지

- 신 규정은 식품 포장의 겉모양과 글자 표기(description), 또는 표기된 그림(pictorial presentation) 등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 한편, 예를 들어 야채 치즈(cheese-like foods made with vegetable products)와 같이 제품의 구성 성분이 본래의 치즈와는 다르나 모양 상 치즈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방식품(imitation foods)들은 소비자가 모방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즉, 어떤 식품에는 정상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 식품의 경우, 포장 팩(pack) 앞면의 브랜드명 옆에 뚜렷한 크기의 활자로 모방식품임을 표기해야 함
-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들어진 육류 식품에는 “formed meat”,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선으로 만들어진 생선 식품에는 “formed fish”라는 라벨로 혼합 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함

□ 일단 EU관보에 발표되면 식품업체들은 3년 내로 동 규정 내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해야 함. 단, 영양가(nutrition values) 관련 규정 조항은 5년 내로 적용하도록 시행기간을 연장함

VIII 스페인 바이어 정보

※ 최종 바이어 리스트 및 컨택 내역은 별도 엑셀 파일(바이어 상담내역)로 첨부하였습니다.

중간보고서에 기재된 바이어 리스트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유효성 검증 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축소/변경/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 참고자료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www.qia.go.kr
-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정보 : <http://www.kati.net/>
- 관세청 : www.customs.go.kr
- GTA : <http://www.tradestatistics.com/gta/>
- 통합무역정보시스템 : <http://www.tradenavi.or.kr/>
- KATI : <http://www.kati.net/>